

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

감사주체	지적사항(조치 지시내용)	처 리 결 과	비 고
행 정 안전부	단순행사 및 직원 대상 연찬회·워크숍 개최 목적의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합동감사 지적 이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단순행사 및 직원 대상 연찬회·워크숍 개최 예산은 집행을 중단하고, 부득이한 경우 행사운영비로 사용조치 · ‘12년도 예산편성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다양한 행사를 제외한 각종 행사·홍보 관련경비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 	정 부 합 동 감 사

© 2010 ~2011년 감사원,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결과로서, 2011년 처분 완료된 재정분야 지적사항에 한하여 작성